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4. 5 선고 2019가단139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전은수, 최상무, 천성연, 임병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묵

변론 종결2022. 1. 24.

판결 선고2022.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9. 7.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주시장 2019. 7. 1. 접수 제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4,514,7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영위 및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

- 1) C은 피고의 남편인데, 2014. 6. 2.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 2) C은 2015. 9.경 E로부터 경주시 F 외 G 지상의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9. 23.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3) 원고는 2015. 11. 4.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C은 2015. 11. 26. 피고에게 위 2)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과 위 100,000,000원을 합한 230,000,000원에 대하여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2016. 10. 30.까지 1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은 2017. 6. 30.까지 변제한다. 이자는 8%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부동산의 취득 및 차용증의 작성

- 1) 원고와 C은 2016. 10. 1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절차에서 경주시 I 임야 4,761m²(2018. 7. 3.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J 임야 340m²(2018. 4. 2. J 임야 150m²와 K 임야 190m²로 분할되었고, J 임야 150m²는 2018. 7. 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를 합계 431,000,000원에 경락받았고, 2016. 10. 1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C은 2016. 11. 14. 원고에게 661,000,000원에 관하여, 그 중 230,000,000원은 2016. 11. 15. 50,000,000원, 2016. 12. 30. 50,000,000원, 2017. 2. 16. 50,000,000원, 2017. 6. 30. 80,000,000원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431,000,000원은 2017.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23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종전대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431,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월 2,590,000원을 매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3) C은 원고에게 2016. 11. 15. 52,500,000원, 2016. 12. 31. 5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과의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레이저 기계 1세트를 23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2017. 3. 6. 지급하고, 중도금 13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65,000,000원은 2017. 9. 22.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3. 5. C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부동산의 추가 매수

1) 원고는 2017. 4. 26. 주식회사 L과의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L으로부터 경주시 M 목장용지 1,072m² 중 364m² 부분을 93,500,000원에 매수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즉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L에게 93,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았다.

2) 원고는 2017. 6. 26. N와의 사이에 경주시 ○ 목장용지 145m², P답 277m², Q 목장용지 532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경주시 R리 1. O 목 145m²(43.66평)

2. P답 277m²(68.13평)

3. Q 지분 266m²(80.465평)

합 688m²(208평 * 650,000) ₩ 135,200,000원

(위 토지와 관련된 S, T, U, V 필지 도로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1. Q 임 266m²(80.465평)은 매수자(원고)에게 이전등기한다. 그리고 P 답 277m²(68.16평)은 매수자(원고)에게 가등기한 후 공장부지로 개발할시 경주시에 기부채납한다.

2. O 목 145m²는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N)는 매수자(원고)에게 사용승낙서를 해주고 공장부지 준공시에는 경주시로 기부채납한다.

3. 도로 W, X은 현재는 경주시로 기부채납된 토지로서 매도자(N)가 공장부지로 개발할

당시(2008년도 5월~2016년 8월) 토지대금, 도로사용료, 마을 발전 개발 부담금, 행정 및 재판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8년 동안 785,000,000원이 소요된 바를 인정하고, 혜택을 보게 된 매수자(원고)는 그 일부 부담금으로 164,8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N)에게 지불한다. (이하 생략)

3) 원고는 2017. 6. 26. N에게 위 부동산 매매 합의 이행 각서에서 정한 300,000,000원(= 135,200,000원 + 164,8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N는 2017. 6. 26. 원고에게 경주시 P답 227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Q 목장용지 532m²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후 N는 2018. 7. 20. 경주시에 ○ 도로 145m²(변경 전 지목은 '목장용지'이다)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자금 대출

1) 원고는 2017. 9. 25. C과의 사이에 경주시 I 지상 신축공장 및 사무동에 관하여 도급인 C,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7. 9. 30.부터 2018. 4. 15.까지, 계약금액 1,307,000,000원(토목공사 574,708,000원, 건축공사 733,230,000원, 공사 진도에 맞추어 지급하고 간접공사비는 C이 부담)으로 정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해당 공사를 '1차 공사'라 한다).

2) C은 2017. 11. 21. 주식회사 Y으로부터 800,000,000원을 대출받고 Y에 경주시 I, J, O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800,000,000원의 대출금은 2017. 11. 22. C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계좌로부터 원고에게 2017. 11. 24. 230,000,000원, 2017. 11. 27. 57,962,259원, 2017. 11. 28. 33,200,000원이 각 송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3) 원고와 C은 2017. 11. 2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D의 공동사업자(지분 2%)로 등록하였다가 2018. 3. 31. '2018. 4. 1.부로 모든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며 원고의 모든 지분을 C이 인수하고 모든 영업허가권을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경주시 I 지상에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2018. 5. 1. C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유치권의 목적물: 경주시 I 일반철골구조 Z동, AA동 및 AB동 3층 일반 철골 구조 사무실

1.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시공자인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한 위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원고가 위 건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기로 한다.

2. 건축공사의 발주자 C은 공사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원고가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쌍방합의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유치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C이 공사대금을 완불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위 건물을 C에게 되돌려 준다.

마. 주식회사 D의 설립 및 자금의 추가 대출

1) 원고와 C은 2018. 5. 3.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C이 대표이사, AC(피고와 C의 자)가 사내이사, 원고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주주명부에 따르면 2018. 9. 18.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D의 총 주식 6,000주는 원고와 C이 각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18. 6. 14. C, AC로부터 '2018. 6. 15.부터 1,530,000,000원을 변제기 2021. 6. 14., 월 이자 7,000,000원(매월 14일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채무이행각서와 '1,530,000,000원을 2018. 12. 30.부터 2021. 6. 14.까지 6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내역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위 채무이행각서에는 주식회사 D의 명판과 인감이, 이 사건 차용증과 상환내역서에는 주식회사 D의 명판이 각 날인되어 있다.

3) C은 2018. 7. 5. 경주시 I 지상 Z동, AA동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8. 7. 26. 주식회사 Y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위 Z동, AA동 건물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위 Z동의 부속건물로 AB동이 존재하고, 위 AA동 건물은 2018. 12. 28. 합병 및 증축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Z동 건물에 통합되었다).

4) C은 2018. 8. 10. 주식회사 Y으로부터 800,000,000원 및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같은 날 경주시 I 토지, 위 Z동, AA동 건물 등에 관하여 각 800,000,000원 및 77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각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대출금 800,000,000원 중 합계 234,668,220원은 공사비 등 명목으로 각 지출되었고, 원고의 아들 AD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465,331,780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C의 위 계좌에서는 2018. 8. 13. 원고의 딸 AE, 배우자 AF 명의로 합계 200,000,000원이, 2018. 8. 14. 원고 명의로 145,323,371원이 각 송금되었다. 한편 위 대출금 700,000,000원은 C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1. 10. 주식회사 AG로부터 매수한 프레스 기계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G에 바로 송금되었다.

바. 공정증서 등 각종 문서의 작성과 피고의 영업 개시

1) 공증인가 법무법인 AH는 2018. 12. 28. 원고, C, AC의 촉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제61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를 채권자, 채무자를 AC, 연대채무자를 C으로 하여 '원고가 2018. 6. 15. AC에게 1,530,000,000원을 변제기 2021. 6. 14., 이자 월 7,000,000원(매월 14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C와 C이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

2.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년 제614호)

원고를 채권자, 채무자를 AC, 연대채무자를 C으로 하여 'AC와 C이 원고에게 2018. 5. 1.자 유치권계약서 및 2017. 9. 25.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간접공사비와 공장 투입비 포함)에 따라 합계 1,727,195,210원의 채무금이 있음을 승인하고, 2020. 12. 31.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

3. 사서증서 인증서(2018년 제1902호)

원고를 임대인, C, AC를 임차인으로 하여 C, AC가 2018. 12. 3.부터 2021. 6. 14.까지 원고로부터 경주시 A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월 7,000,000원(매월 14일 지급)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2018. 12. 3.자 장비 임대계약서에 대한 인증

2) 원고는 경주시 I 지상에 AJ동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이하 그 공사를 '2차 공사'라 한다), C이 2018. 12. 28. 위 AJ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19. 5. 15. 주식회사 AK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원고는 2019. 4. 28. C으로부터 '전세자금 130,000,000원, 레이저계약금 40,000,000원, 토지대금 431,000,000원, 진출입로 N 300,000,000원, 공사 미지급금액 130,000,000원, 창고건물 410,000,000원, 주식회사 D 자재대금 194,000,000원 합계 1,6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 4) 피고는 2019. 6. 1. 'AL'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A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 5) 원고, AE(원고의 딸)은 C, AC로부터 '채권자 원고, AE과 채무자 C, AC 사이의 금전거래로 인한 민사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울산지방법원)을 3개월 미루어 달라, 은행권의 서류심사가 3개월 소요되니 은행권 대출 후 차용금, 대여금(급여 및 외주결제 대금), 공사 미지급금액(공사금액 정산 완료 후) 일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2019. 6. 17.자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그 각서에는 주식회사 D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6) 원고는 주식회사 D와 C으로부터 '도로 305,000,000원, 공장부지 431,000,000원, 레이저 170,000,000원, 차용금(공사대금 미지급 105,000,000원, 원고와 AE에 대한 차용금 149,130,000원), AJ동 및 창고 415,000,000원을 주식회사 Y 등과의 대출협의 진행시부터 3개월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9. 6. 17.자 이행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그 이행지불각서에는 주식회사 D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7) 피고는 2019. 7. 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 8) 피고, C, AC는 2019. 9. 17. 원고에게 합의서(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 AC, 피고 및 D 내지 주식회사 D와 관련된 사람들의 위 C 명의 경주시 I 토지 및 공장 내, 외부 일체 출입을 금하고, 위 C 등은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2. C, AC 등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유치권을 인정하며,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는 2018. 12. 28. 작성 법무법인 AH 작성 공정증서 제614호, 동 1902호 등의 각 인증서를 추인한다.
- 9) 원고와 C은 2019. 9.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C은 다음과 같이 경주시 I 일반철골구조 Z동, AB동 3층 일반철골구조사무실에 관하여

유치권계약서에 합의하기로 한다.

다음

1. 원고의 비용으로 시설했던 별지 목록 건축물1)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1,727,195,21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행사를 하기로 한다.

3.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법무법인 AH 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터 잡은 피담보채권액 1,727,195,120원인 유치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C은 원고의 위 피담보채권액 1,727,195,120원의 유치권에 관하여, 확인하고 인낙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않고, 부제소특약을 하기로 한다.

10) 원고는 2019. 9. 20. C과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경주시 I, J 및 그 진입로 토지대금 736,000,000원 중 332,494,989원을 변제하였고 403,505,011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교부받았다.

11) 원고는 2019. 9. 20. C으로부터 '공사도급계약금액 1,307,000,000원 가운데 736,147,192원(= 대출금 1,600,000,000원 - 지출금액 합계 863,852,808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852,808원의 1차 공사비 미지급 금액, 2차 공사비(취, 등록세 포함) 미지급 금액 415,000,000원, Z동과 AA동 연결공사비 33,511,880원의 총 합계 1,019,364,688원의 공사비를 미지급하였다'는 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3, 14, 23, 30, 32, 33,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11 내지 17, 21, 26, 31 내지 33, 34, 36호증(을 제1호증의 2, 제26호증의 4, 7 내지 9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C은 2018. 6. 14.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등의 기재와 같이 1,5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대물변제 받은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0,000,000원2)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9. 7. 1.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C과 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L을 설립하고 2019. 7. 1.부터 2020. 3. 30.까지 C(D)과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는 합계 104,514,779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면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04,514,77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1)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사항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2015. 9. 23. C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은 원고가 C과의 사이에 체결한 위 1.나.4)항 기재 레이저 기계 1세트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대체되었고(원고는 이 법원 2020가합3024 사건에서 C이 레이저 기계 1세트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레이저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5. 11. 4.자 100,000,000원의 경우 C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6. 11. 15.자 52,500,000원 및 2016. 12. 31.자 52,000,000원으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경주시 I, J 토지의 매수대금 중 431,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 D의 공동사업자 등록, 2018. 3. 31.자 동업해지계약서의 작성, 주식회사 D의 2018. 9. 18.자 주주명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는 동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와 C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만약 C이 원고로부터 431,000,000원을 차용하였다면 C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C의 채무상태를 고려하여 담보조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설정 등도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도 이례적이다), 431,000,000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31,000,000원은 동업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일 개연성이 높고, 해당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431,000,000원이 동업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원고는 C에 대하여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채권을 가질 뿐인데, 그 정확한 내용과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특정한 적이 없다.

다) 경주시 O 등 토지 매매대금 305,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원고가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C이 직접 물권을 취득한 바 없고, 경주시 M 토지도 C이 아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일 뿐이므로, 원고와 C 사이에서 그 매매대금이나 소요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일 가능성도 존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원고가 그에 관한 내용도 밝힌 적이 없다(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라) 원고와 C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채무에 관한 다수의 문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1, 2차 공사의 비용 대부분 C 명의 대출금에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부담한 비용이 있더라도 대출금에서 상당한 금액이 원고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C이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로서 종국적인 비용부담 주체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원고와 C 사이에 실제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AJ동 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C이

소유자라고 볼 수 없고, AJ동 건물에 관하여 C이 원고에게 41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계약이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실제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일 뿐이다.

마)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에서는 월 7,000,000원의 이자를 정하였으나, 원고와 C 사이에 실제 그 이자가 지급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와 함께 또는 그 이후 작성된 다수의 서면들 사이에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금액이 일관되지 않는 점, 그 내역에 C이 원고에게 실제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채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의 기재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다수의 문건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와의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들을 작성하여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건들은 실제의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및 그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작성된 다수의 문건들을 기초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문건들의 신빙성은 낮고, 피보전권리의 내역, 금액에 관하여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와 C 사이에 동업관계에 따른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막연하고 추상적인 피보전권리의 존재가능성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 공정증서 등에 기한 대여금채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영일

별지

1) 경주시 I 지상 2동 건물을 의미한다.

2) 원고는 소장에서 C과 AE 사이의 채무 149,130,000원도 공제대상으로 주장하였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상 AE이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제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본다.